

제425회 임시회

'25. 4. 22.(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5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을 위해 존속 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8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1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을 위해 존속 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기존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1년 2월 9일 제정)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 또한 기존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그 동안 사회복지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해 왔던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정 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을 그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사회복지기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함.

○ 조례안의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1. 조문 체계>

	조항	규정내용(조 제목)	주요내용
총칙규정	제1조	목적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 명시
실체규정	제2조	기금의 조성	국고보조금, 충청북도 출연금, 운용수익, 기타 수입으로 기금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1. 노인복지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3.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4조	노인복지 지원사업	▲노인 교육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단체 사업 지원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육성 등
	제5조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의 권익증진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 등
	제6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수혜자를 규정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도금고 예치, 회계규칙 준용 등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운용관, 분임운용관, 출납원
	제10조	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회계연도 단위 계획 수립 및 도의회 보고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	시행규칙	세부사항 규칙으로 위임
	부칙규정	부칙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2001년 2월 9일 제정 제2639호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에 대해 규정함.
 - 국고보조금, 충청북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임.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함. 특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자격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발 절차 및 장학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
 - 계정 구분, 도금고 예치,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각각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포괄기금의 성격으로, 계정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또한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표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동)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동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동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동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동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동)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동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동 상 **여유 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동하여야 한다.

○ 제8조는 기금운동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기금운동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다만 효율적 운동을 위해 통합 설치·운동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심의운동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복지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회복지보장위원회가 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어 위원회 기능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 운동 측면에서 사회복지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9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10조는 기금운동계획의 수립과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이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1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임.

- 본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아니므로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한 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표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제2조는, 2001년 2월 9일 제정되었다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폐지조치가 없더라도 폐지된 것으로 볼 수있지만, 부칙에 따른 폐지 절차를 통해 도민이 폐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을 위해 존속 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었고, 조례안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